

**「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5~16호)

◦ 2026. 9. 1.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8. 1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18.

다. 상 정 일 자 : 2026. 9. 1.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 의안번호 제15호 】

-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운로 107(서초2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17년 3월 1일 개원하였으며, 현 수탁자인 안민아(개인)가 2017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

규위탁과 재계약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하게 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 교직원 및 재원아동 관리(개인정보처리 포함)
- 표준보육과정 이행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어린이집명	주소	면적	층수	위탁기간	위탁체	정원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 어린이집	서운로 107 (서초2동)	149㎡	총2층 (지상1층, 지하1층)	2022.03.01. ~ 2027.02.28.	안민아(개인)	22명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5년

※ 단,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에 의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제4항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393,666천원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예상

- 산출근거

- 정부지원 보육료 : 122,617천원(아동수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 인건비 보조금 : 257,087천원(보육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 운영 보조금 등 : 13,962천원(교재교구비,친환경급식비,공기청정기 등)

※ 직전 3개년도 보조금 및 지원금 평균으로 추계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6년 제6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를 심의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심의 가결되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조(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및 3항

○ 추진경과

- 2016. 12. 16. : 제266회 서초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7. 02. 01. : 2017년 제1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17. 03. 01. ~ 2022. 02. 28.(5년) : 신규위탁
- 2021. 12. 14. : 2021년 제8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2. 03. 01. ~ 2027. 02. 28.(5년) : 재계약(재위탁)
- 2026. 08. 0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제6차 보육정책위원회)

※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상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상 변경위탁(공개경쟁)이며,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상 재계약은 영유아보육법상 재위탁(비경쟁)임

○ 향후계획

- 2026. 11.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여성보육과)
- 2026. 12. :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 예정 (공개경쟁)
- * 선정 방식 : 위탁운영체 간 경쟁을 통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한
위탁운영체를 차기 위탁체로 선정
- * 지원자 모두 평균 70점 미만 시에는 재공고 진행

【 의안번호 제16호 】

-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은 서초구 바우피로7길 11(양재1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994년 12월 1일 개원하였으며,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대표 : 김상기)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 재계약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향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하게 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립 우면어린이집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 교직원 및 재원아동 관리(개인정보처리 포함)
- 표준보육과정 이행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어린이집명	주소	면적	층수	위탁기간	위탁체	정원
서초구립 우면 어린이집	바우로7길 11 (양재1동)	182㎡	지상1층	2022.07.01. ~ 2027.02.2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	47명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5년

※ 단,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에 의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제4항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444,372천원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예상

- 산출근거

- 정부지원 보육료 : 138,769천원(아동수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 인건비 보조금 : 282,532천원(보육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 운영 보조금 등 : 23,071천원(교재교구비,친환경급식비,공기청정기 등)

※ 직전 3개년도 보조금 및 지원금 평균으로 추계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6년 제6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를 심의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심의 가결되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조(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및 3항

○ 추진경과

- 2011. 07. 01. ~ 2014. 06. 30.(3년) : 신규위탁
- 2014. 07. 01. ~ 2017. 06. 30.(3년) : 재계약(재위탁)
- 2017. 03. 13. : 제268회 서초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7. 05. 12. : 2017년 제3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17. 07. 01. ~ 2022. 06. 30.(5년) : 재위탁(변경위탁)
- 2022. 05. 13. : 2022년 제2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2. 07. 01. ~ 2027. 02. 28.(4년 8개월) : 재계약(재위탁)
- 2026. 08. 0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제6차 보육정책위원회)

※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상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상 변경위탁(공개경쟁)이며, 서초구 민간위탁 조례상 재계약은 영유아보육법상 재위탁(비경쟁)임

○ 향후계획

- 2026. 11.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여성보육과)

- 2026. 12. :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 예정 (공개경쟁)

* 선정 방식 : 위탁운영체 간 경쟁을 통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한 위탁운영체를 차기 위탁체로 선정

* 지원자 모두 평균 70점 미만 시에는 재공고 진행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및 같은 구립 우면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이의 각 해당 어린이집은 같은 재위탁 안전들이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요구되는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에 해당하고 있고,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보육시설로서 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보육과정 운영, 아동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급식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무에 해당하고 있고,
-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공공보육서비스 영역으로서, 법령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함께 그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운영 방식과 더불어 민간위탁 방식 등 다양한 운영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에 있고,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정사무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운영주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로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재위탁)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²⁾에서는 “국가나

1)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 8의2〕 제1호다목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과 관련한 일반 기준을 규정하면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기간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 한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⁴⁾에서는 구청장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⁵⁾에서는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2)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3)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제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칙」 제2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세부 기준을 조례 차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⁶⁾에서는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가운데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3항⁷⁾에서는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 운영 및 의회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7)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각 동의안 주요 내용 등

-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및 같은 구립 우면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위치, 면적, 규모, 위탁형태 및 정원 등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위탁시설 주요 현황

의안 번호	시설명	주소	면적	시설규모	위탁형태 (현 위탁기간)	위탁체	정원
15	에스티지하늘 어린이집	서운로 107 (서초2동)	149㎡	총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재계약 (2022.3.1.~ 2027.2.28.)	안민아 (개인)	22명
16	우면어린이집	바우외로 7길 11(양재1동)	182㎡	지상 1층	재계약 (2022.7.1.~ 2027.2.2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 종 복지재단	47명

- 의안번호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각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기존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탁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제3항⁹⁾에서는 동일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9)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에 포함된 재위탁 대상 각 어린이집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며,

- 위 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에스티지하늘 어린이집 5년, 우면어린이집 4년 8개월로 설정되어 있음. 이는 같은 조례 제8조¹⁰⁾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 수탁자 선정방식을 살펴보면, 재위탁 대상인 각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¹¹⁾에서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위 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정부지원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교재교구비 및 급식비 등 운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3개년도 보조금 및 지원금 평균으로 추계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10)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어린이집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연번	시설명 (‘서초구립’ 생략)	사업비용	산출내역
1	에스티지하늘 어린이집	연 393,666천원	정부지원 보육료: 122,617천원(아동수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인건비 보조금 : 257,087천원(보육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운영 보조금 등 : 13,962천원(교재교구비, 친환경급식비 등)
2	우면어린이집	연 444,372천원	정부지원 보육료: 138,769천원(아동수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인건비 보조금 : 282,532천원(보육교사 및 종사자 인건비)
			운영 보조금 등 : 23,071천원(교재교구비, 친환경급식비 등)

○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개보수 등 보육환경 개선,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 강화,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운영 성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위반사항이 없는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음.

각 해당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 실적 등

시설명		내 용
에스티지 하늘어린이집 에스티지하늘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실적 서비스 개선실적	○ 보육환경 개선 및 시설 기능 보강 - 구청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으로 영아용 화장실 세면대, 큐비클 및 상부장 교체, - 보육실 포켓도어 레일·롤러 교체, 현관 중문 교체 공사 실시 (25년 5월) - 조리실 식기세척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교체 실시 (26년 4월) ○ 교사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개정 표준보육과정, 신입·경력교사, 중간관리자 교육 실시 - 서초 보육 스태프 사업 참여를 통한 전문성 향상 ○ 부모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시설명		내 용																			
사업주요 추진실적 (2025~2026년)		- 신입 원아 입소 초기 1:1 맞춤 개별오리엔테이션 및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과 어린이집 간 연계 및 소통 강화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사업 참여 ○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및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table><tr><th>연도</th><th>추진실적</th></tr><tr><td>2025년</td><td>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평가제 결과 (서술형 평가, 모든 평가 영역 충족) </td></tr><tr><td>2026년</td><td>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리더)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저염실천급식소「저염한끼」지정 - 서초 보육 스텝업 사업 참여를 통한 교사 전문성 및 보육과정 운영 강화 - 서초구 모범보육교직원 (원장) 국회의원 표창 수상 </td></tr></table>	연도	추진실적	2025년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평가제 결과 (서술형 평가, 모든 평가 영역 충족)	2026년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리더)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저염실천급식소「저염한끼」지정 - 서초 보육 스텝업 사업 참여를 통한 교사 전문성 및 보육과정 운영 강화 - 서초구 모범보육교직원 (원장) 국회의원 표창 수상													
	연도	추진실적																			
2025년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평가제 결과 (서술형 평가, 모든 평가 영역 충족)																				
2026년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을 통한 개방적 보육환경 조성 -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서초2동 클로버 권역 사업 참여 (리더) -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정 연계 강화 - 서울시 방문간호사 사업 참여를 통한 영아 건강관리 지원 - 저염실천급식소「저염한끼」지정 - 서초 보육 스텝업 사업 참여를 통한 교사 전문성 및 보육과정 운영 강화 - 서초구 모범보육교직원 (원장) 국회의원 표창 수상																				
지도점검	<table><tr><th>일시</th><th>점검제목</th><th>점검기관</th><th>지 적 사 항</th><th>조치결과</th></tr><tr><td>2022.06.21.</td><td>(50인 미만)하절기 급식위생점검</td><td>급식관리 지원센터</td><td></td><td>위반사항 없음</td></tr><tr><td>2023.11.15.</td><td>‘23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td><td>서초구청</td><td></td><td>위반사항 없음</td></tr><tr><td>2025.09.01.</td><td>‘25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td><td>서초구청</td><td></td><td>위반사항 없음</td></tr></table>	일시	점검제목	점검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22.06.21.	(50인 미만)하절기 급식위생점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반사항 없음	2023.11.15.	‘23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서초구청		위반사항 없음	2025.09.01.	‘25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서초구청		위반사항 없음
일시	점검제목	점검기관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22.06.21.	(50인 미만)하절기 급식위생점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반사항 없음																	
2023.11.15.	‘23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서초구청		위반사항 없음																	
2025.09.01.	‘25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서초구청		위반사항 없음																	
우면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실적	○ 노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친환경 도배, 장판 및 친환경 교구장과 사물함 설치, 어린이집 현관 데크 설치 공사를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음. ○ 보육스텝업 참여로 인한 보육과정 운영 향상 - 보육 스텝업 사업을 통하여 놀이중심의 표준보육과정 형성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향상시킴. ○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로 인한 놀이중심 보육과정 향상																			

시설명		내 용
		 </

■ 민간위탁 적정성 · 타당성

- 본 동의안의 위탁 대상인 각 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재원아동 관리, 표준보육과정의 이행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수행하여야 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기능과 시설 운영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이고,

- 특히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보육서비스 영역으로서 보육과정 운영, 안전관리, 급식 및 위생 관리, 아동관리 등 다양한 운영 기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 해당 어린이집의 현황에 따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또는 조리원, 사회복지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는 등 일정한 전문성이 수반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 또한 이러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운영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운영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성격의 사무라기보다는 전문적 운영이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사무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운영상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와 행정적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 과정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감독이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점과 함께 현재 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으로서 일정한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 특히 본 동의안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그간의 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 성과 등이 비교적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위탁 추진의 취지와 요건에도 부합되어 보이며,
- 따라서 본 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과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제출된 사안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회계관리,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에스티지하늘어린이집 인근에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래미안서초에스티지, 리더스원, 그랑자이)가 운영중임. 최근 아크로리버파크 사례처럼 현원이 줄어들어 통·폐합이 진행되는 경

우를 대비해 민간위탁 시 향후 5년정도 시설규모와 충분한 원
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지?

답> 저출산 여파와 500세대 이상 재건축단지 내에 어린이집 의무 설
치 규정으로 올해만 6개소가 개원 예정이라 5년 뒤 현황을 정확
히 예측하긴 어려움. 또한 정원 충족률이 낮다고 단순 폐원·합병을
추진하면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던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게 됨.
현재 부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통·폐합
및 운용에 관한 기본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음.

추가 의견>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밀집으로 인해 현원감소 및 통·폐합 가능
성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사전 수요 분석과 수급 조절을 철저히 검
토하여 학부모가 불필요한 혼란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
길 바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화구정리내용 : 없음